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에 대한 부과취소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(부과취소 및 변경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가. 납세자 : ***

나. 부과취소사유 : 납세지 착오납부

다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109,067,670	109,067,670	0

- 붙임 1. 부과취소결정서
 2. 부과취소내역서
 3. 부과취소관련자료. 끝.

주무관 송민혁 지방소득세5팀 표지영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01/28 김용운

협조자